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중개금지 대상을 미신고 숙박업자로 수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특성·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예외조항 및 벌칙을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통신판매중개중개자등에게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예외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2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1항 중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을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으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제1항 전단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는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로, “공중위생영업”은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제3조제1항 전단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현행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 ----- ----- ----- ----- ----- -----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 -----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제1항 전단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신설>	② 통신판매중개자	② -----

	<u>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u> <u>-----통신판매 중개(통신판매 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제3조제1항 전단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0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 설></u>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4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 중개를 한 통신</u>	제2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2. (생략) ③·④ (생략) 제22조(과태료) <u><신설></u>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u>판매중개자등</u>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 ----- ----- ----- ----- ----- ----- ----- 부 칙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071
----------	------

발의연월일 : 2024. 11. 29.

발 의 자 : 서명옥 · 박준태 · 서천호
배준영 · 박정하 · 조정훈
김석기 · 강선영 · 강명구
김용태 · 강대식의원(11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가. 통신판매중개중개자등에게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 판매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예외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나.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2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등”이라 한다)는 제2항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제1항 전단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제3조제1항 전단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현행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u>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제1항 전단 및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제3조제1항 전단의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

제22조(과태료) <u><신 설></u>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u>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 ----- ----- ----- -----.
---	--